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민성 의원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민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

발 의 자: 김민성 의원(1인)

찬 성 자: 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
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
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
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
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
추은희·허민근 의원(22인)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라. 실무추진단,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마.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2, 제8조, 제19조, 제24조
-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나. 부서검토: 미래도시전략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주관부서는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도시계획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과 보안관리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

트도시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

서 담당과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추진단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무 사항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참여 활성화) ① 협의회의 활동 촉진을 위해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미시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3. 스마트도시 관련 설문조사 및 행사, 프로그램 등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공모 당선자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시범도시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⑦ (생략)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그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미래도시전략과

조 례 명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 주요 사항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실무추진단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14조)

□ 검토 결과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구미 특화형 스마트도시 정책의 체계적 추진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 및 제13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자 수당 등 회의 운영비
- 안 제14조: 스마트도시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운영비,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 소요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등)
- 소요예산액: 23,860천원(협의회 운영 16,160, 공모전 7,700)
 - 협의회 회의 운영: 16,160천원
 - ※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150천원 / 2시간 이상 기준)
 - 협의회 참석수당: 위원 15명 × 연 2회 × 150천원 = 4,500천원
 - 자문수당: 위원 15명 × 연 2회 × 150천원 = 4,500천원
 - 주민협의체 참석자 실비보상 : 20명 × 연 2회 × 9천원 = 360천원
 - 회의운영: 1,700천원 × 연 4회 = 6,800천원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7,700천원
 - 공모전 운영: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공모전 심사수당: 100천원 × 15명 × 2회 = 3,000천원
 - 시상금 지급: 2,700천원 × 1식 = 2,700천원
 - 최우수(1) 1,000천원, 우수(1) 700천원, 장려(2) 500천원

4. 작성자

- 미래도시전략과 스마트시티팀 박은진(☎054-480-2572)